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

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대전가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르*** (본소), 2014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 요점 및 설명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62년생 여자

피고 1 : 1960년생 남자, 피고 2 : 1961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 1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밤늦게 퇴근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등 집안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불만을 가지고 자주 다투었음. 피고 1은 피고 2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니면서 친해져 식당영업이 끝나면 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기도 하였음. 피고 1은 피고 2와 친해지면서 집을 나와 주택을 임차하였고 피고 2는 위 임차주택에 드나들며 새벽에 함께 있기도 하였음. 이후 원고와 피고 1은 상호간에 본소 및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함(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피고 1은 아내인 원고를 외면한 채 피고 2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늦은 시간에 피고 2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새벽시간에 한 집에 함께 있기도 하는 하였는바,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판결문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 등을 비실명으로 하고, 표제부와 증거기재 부분 등을 생략함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5항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원고의”를 “원고(반소피고)의”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729,4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2. 12.까지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피고 □□□과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에게 재산분할로 25,382,598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피고 □□□은 1996. 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 △△△는 [REDACTED]에서 '

■■■■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년경 전 남편과 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08년경부터 ○○○○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후에 출근하였다가 밤늦게 퇴근하였는데, 피고 □□□은 원고가 밤늦게 취침한 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등 집안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만을 가졌다. 또한 원고도 피고 □□□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3) 원고와 피고 □□□은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에 따라 2012년 봄부터는 피고 □□□이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악화되었다.

4) 한편 피고 □□□은 친구와 함께 피고 △△△ 운영의 식당에 다니면서 피고 △△△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위 식당에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식당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소유의 자동차로 피고 △△△를 집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2. 6. 29. 지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에서 함께 장을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지다가 피고 □□□이 전화를 끊고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 □□□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 피고 □□□은 그 무렵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2012. 8. 31. ■■■■

■■■■층(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임차하였다.

7) 원고는 피고들을 미행하다가 2012. 10. 18. 01:30경 피고들이 이 사건 임차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 □□□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8) 이후 원고는 또다시 피고들을 미행하다가 2012. 11. 21. 02:20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피고들과 피고 △△△의 직원 등 4명이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9) 한편 원고는 2012. 10. 15.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도 2013. 3.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4호증 내지 갑 1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혼 청구 부분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 87므■■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아내인 원고를 외면한 채 피고 △△△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피고 △△△의 식당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늦은 시간에 자동차로 집에 데려다주기도 하며,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미행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피고 △△△와의 관계를 해명하기는커녕 피고 △△△와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임차주택에 합

계 있기도 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피고 ○○○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을 6, 7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와 피고 ○○○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의 혼인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 △△△와의 부정행위로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 ○○○의 잘못이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위와 같은 피고 ○○○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 △△△는 피고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피고 ○○○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 역시 피고 ○○○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 정도, 그것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은 이혼하고, 피고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는 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주문 제2의 가.항 돈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2.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 주장의 요지

피고 ○○○은, 원고가 결혼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약 10년간 자신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도 숨겼으며, 혼인 초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점심 무렵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여 피고 ○○○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사건 본인에게 엄마의 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피고 ○○○을 미행하면서 욕설과 모욕을 지속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이혼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가사일 등에 소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늦게 퇴근하는 관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사건 본인에게 엄마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피고 ○○○을 미행하면서 욕설과 모욕을 지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한편 원고가 혼인 당시 자신이 재혼이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피고 ○○○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등을 참작하면,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 ○○○의 반소 이혼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요재산의 형성 경위

1) 원고는 피고 ○○○과 혼인 당시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임차주택을 마련하였고, 1996. 8. 1.부터 2011. 7. 19.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 판매직원의 일도 겸하였다. 한편 피고 ○○○은 1996년 말경부터 1999년까지 ■백 화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부터 지게차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대전 ■■■ 지게차 등을 중고로 구매하는 등 2대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경 ■■■■ 대지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농협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의 동생들인 ▲▲▲, ▷▷▷, ◎◎◎, ◆◆◆, 그리고 시누이인 ▶▶▶에게서 합계 4,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4) 원고는 2012. 4.경 ▲▲▲에게서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농협대출금의 원리금도 꾸준히 변제하여 그 원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15. 3. 17. 대전■■■■ 지게차(4.5톤)를 1,934,300원에 매도하여, 위 지게차의 미납수리비 1,934,300원과 미납과태료 32만 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날 대전■■■■ 지게차(6.8톤)를 470만 원에 매도하여 미납지입료 113만 원과 과태료 5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목록 기재 재산분할명세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25,465,196원

나) 피고 □□□의 순재산 : 1,967,389원

다) 원고와 피고 □□□의 순재산 합계 : 27,432,585원

[인정 근거] 갑 21호증 내지 갑 28호증, 갑 38, 40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체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 □□□ 명의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 □□□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위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당일 계약조건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을 자녀인 ◀◀◀ 명의의 통장에서 임대인 ◆◆◆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농협의 마이너스대출금 6,118,685원과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1,289만 원 상당도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농협의 마이너스대출금의 경우 원고가 피고 □□□과 별거한 이후에 대출받은 것이라고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각 보험사의 대출금에 관하여도, 별지 목록 기재 재산분할명세서에서 각 보험사의 예상해약환급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당시 이미 그 해당 대출금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는 부부의 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친정 어머니인 □□□로부터 빌린 합계 3,296만 원도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로부터 빌린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경위는 어떻고 그 차용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위 차용금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자신이 2013. 5. 6.경 구입한 대전 ■■■호 지게차의 시가 4,480만 원 상당을 위 피고의 적극재산에, 그와 관련된 대출 및 할부채무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 ■■■ 판결 등 참조).

둘러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보건대, 위 지게차는 원고와 위 피고가 별거한 이후 이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따른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위 피고가 단독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위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혼인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의 재산 형태, 그 이용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재산분할의 편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 ○○○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 ○○○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함

3) 원고가 피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가) 원고와 피고 ○○○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 ○○○의 순재산 합계 27,432,585원 × 50% = 13,716,292원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위 가)항의 금액에서 피고 ○○○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1,748,903원 (= 13,716,292원 - 1,967,389원)

다) 원고가 피고 ○○○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 기재 금원을 약간 하회하는 11,700,000원

마. 소결론

당심에서 원고의 2015. 4. 3.자 참고서면의 주장 및 첨부자료를 반영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제1심판결에서 명한 1,260만 원에서 1,170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않고 피고만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한 이상 당심에서는 피고의 불복범위를 벗어나는 판단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게 재산분할로 1,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1996. 2. 13.생으로서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미 성년에 이르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양육책임을 부담하므로, 사건본인이 이 소송 중에 성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원고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앞으로도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리라고 예상되는 점, 기타 원고와 피고 □□□의 나이, 환경,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피고 □□□이 그동안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가 부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월 7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11. 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5. 2. 12.까지 월 70만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본소 및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본소 양육비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함이 타당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신한미, 김은영